

異議가 없는 것으로 알고 異議없으므로 이 상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
(議事棒 3打)

(參 照)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
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5일후에 시행한다.

[별 표]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

(단위: 원)

종 류	단 위	수 수 료	
1. 재증명 확인 발급사항			
가. 신원에 관한 사항			
(1) 재직, 경력 및 퇴직에 관한 증명	1건	400	
(2) 연수 및 이수에 관한 증명	1건	400	
(3) 경기입상에 관한 증명	1건	400	
나. 회계에 관한 사항			
(1) 물품납품 및 공사사실 등에 관한 증명	1건	600	
(2) 원천세 공제에 관한 증명	1건	400	
다. 학원,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증명	1건	600	
라.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	1건	400	
2. 각종 인.허가, 등록, 신고에 관한 사항			
가. 법인 및 학원의 인.허가, 등록, 신고에 관한 사항			
(1) 법인 설립허가 및 변경신청	1건	600	
(2) 학원 설립인가, 등록 및 변경신청	1건	600	
(3) 과외교습 신고 및 변경신고	1건	600	
나. 신청 등에 관한 사항			
(1) 입찰참가신청	1건	600	
(2) 공유재산매수신청	1건	600	
(3) 공유재산대부신청	1건	600	
3. 중·고등학교 학생 재증명에 관한 사항		국 문	외국문
가. 성적증명서(석차연명부 포함)	1건	300	400
나. 졸업증명서	1건	300	400
다. 수료증명서	1건	300	400
라. 재학증명서	1건	300	400
마. 재적증명서	1건	300	400